

■ **[적용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적용시기]** '23.8.31.~별도 개정 시까지

※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1판)

2023. 8. 29.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 10판	제 10-1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제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제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삭제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		

대응 방향

-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급을 조정('2급'→'4급')하고 방역 체계를 완화('23.8.31.')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관련 내용 수정 반영 적용

학교 일상관리

1. 학교 환경관리

- (방역물품)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 고려 최소 기준 수량* 비치
*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시 수준 비축·유지
- (일시적 관찰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유지(1층 등 신속 귀가 가능 장소에 마련)
- (급식실) 급식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 급식종사자의 확진자 권고 격리 기간 준수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2. 개인 방역관리

-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방대본 발표) 실천 및 교육·홍보 지속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 홍보 등 지속 실시
※ 방역 강화 등의 사유로 학교 내 정수기(음용) 사용 또는 양치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금지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참고' 별첨)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3.1.30.(월)부터 해제(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
 - ※ 학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교 차원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상황 발생 시 관리

○ 유증상자 발생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참 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23.1.30.~)되어 있으나,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① 코로나19 확진자 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 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③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p>《사례별 권고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9판)」 참고